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1998년 9월 23일 제출
- 나. 발 의 자 : 오광교 의원의 3인
- 다. 회부일자 : 1998년 9월 25일
- 라. 상정일자 :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98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광교 의원)

가.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6조 제1항 중 “18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구의원 전원으로 한다”를 구의원 전원, 전문위원 1인, 구보편찬 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함) 1인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 제7조의 1 제2항 중 “6인 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대변인,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7인 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대변인, 상임위원,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한다.
- 제8조 제2항 중 “의정계장이 된다”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재영)

-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함. 서구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주민에 알리는 수단으로서 반기별로 의회보를 발행하고 있음.
- 이번에 개정논의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구성(개정조례안 제6조), 실무소위원회 및 간사에 관한 규정 등으로서, '98.4.30에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수가 18명에서 13명으로 감원 조정되었고,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음.
- 개정조례안 제6조의 특징은 의원정수의 감원으로 인한 편집위원회 위원수의 조정

하고 전문위원과 구보편찬 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며, 개정조례안 제7조의1의 특징은 실무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보편찬 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며, 개정조례안 제8조의 특징은 서구청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계제제도의 폐지로 편집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보존의무를 갖고 있는 간사를 당연직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음.

- 개정조례안 제6조와 제7조의1은 그 동안 의회보발행에 사실상 참여해 온 실무진을 편집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의회보발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한 것이고,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은 서구청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계제제도의 폐지로 따른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